

부산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42037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4203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32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현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울

담당변호사 이호철, 한경훈

변론종결 2023. 3. 8.

판결선고 2023. 3. 2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329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50,738,142원 및 그중 181,358,358원에 대하여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912,779원 및 그중 181,358,358원에 대하여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률 “연 12%”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912,779원 및 그중 181,358,358원에 대하여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영농조합법인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소개받고, 2018. 7. 30. 이자 월 15,000,000원, 변제기 2018. 9. 17.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소외 회사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위 대여에 앞서 원고는 2018. 7. 27.경 피고로부터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문자메시지로 수령하였는데, 해당 차용금증서에는 ‘채권자 소외 회사’,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피고’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하단에 소외 회사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이하 ‘제1차용증’라 한다)¹⁾.

다. 소외 회사는 2018. 7. 30.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설정등기는 2018. 9. 17. 해지되었다. 그리고 2018. 12. 12.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7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었다. 위 근저당권 설정 관련 업무는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피고가 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 대여금은 소외 회사 및 피고 등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입금되는 방식으로 2018. 9. 17.부터 2019. 11. 13.까지 별지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70,500,000원이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연대보증인 내지 ‘주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소외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채무를 승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되고 남은 2021. 3. 31. 기준 채무 250,912,779원(181,358,358원 + 69,554,421원)과 그중 원금 181,358,358원에 대하여 위 최종 이자 계산의 다음날인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제1차용증을 폐기하고 2018. 7. 27.자로 다시 작성되었다는 차용금증서(을 제1호증, 이하 ‘제2차용증’)와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이 E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차용증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증으로 인정하기 힘들고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제1차용증에는 차용증의 중요한 내용인 ‘이자를 월 15,000,000원으로 한다는 점(제1항)’과 ‘법인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제6항)’이 각 기재되어 있다. 반면 제2차용증에는 위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

② 제1차용증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토티오톰으로 볼 수 있고, 연대보증인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으나 피고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를 원고에게 직접 전송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하기로 하는 의사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차용증을 문자메시지로 수령하였고 제2차용증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제1차용증을 폐기한 이후 소외 회사가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작성일자, 교부일자, 작성경위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와만 연락을 취하였고 소외 회사 관계자는 만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 제출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일응 인정할 수 있다.

④ 제2차용증 상단의 팩스 전송기록을 보면, 2021. 8. 18. 10:48 지역번호가 055인 팩스로(원고는 소외 회사 번호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해당 문서가 전송되었고, 이후 원고가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 이 사건 원고대리인 사무실로 각 전송되었는데(법무사 사무실에 전송된 시간이 12:08, 원고 대리인 사무실에 전송된 시간이 11: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팩스 전송기록이 기재된 순서, 첫 번째 전송기록과 원고 대리인 사무실에 전송된 기록의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로 연결되는 점, 원고 대리인이 제2차용증을 2021. 8. 18.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사 사무실, 원고 대리인 사무실의 순서로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8. 7. 27.경 위 차용증을 소외 회사가

작성해서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 스스로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팩스 전송기록을 설명하기 어렵다.

⑤ 제2차용증에 날인된 원고의 도장은 피고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소위 ‘막도장’인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도장의 날인을 근거로 제2차용증이 원고를 포함한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⑥ 원고와 피고 간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변제(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대출신청을 해두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여 상당한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피고가 자신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 또는 피고는 2018. 9. 17.부터 2019. 11. 13.까지 원고에게 별지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5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총당방법을 합의하였다거나 특정 대여금채권에의 총당을 지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액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총당을 하면, 별지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마지막 변제총당일인 2019. 11. 13. 기준으로 원금 181,358,358원, 이자 9,397,371원이 남고, 2021. 3. 31. 기준 채무를 계산하면 원금 181,358,358원, 이자 69,379,784원(= 9,397,371원 + 59,982,413원2)) 합계 250,738,142원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738,142원 및 그중 원금인 181,358,358원에 대하여 위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앞서 본 항소취지의 기재와 같이 불복범위를 한정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부분은 항소취지에 따라 연 12%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위은숙, 판사 신승아

별지

1) 피고는 이 사건 제1차용증에 채권자, 채무자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고 입회인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최초 교부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2019. 11. 14.부터 2021. 3. 31.까지 이자 $\{= 181,358,358 \times 0.24 \times (1 + 138/365)\}$